

Information



화학물질 분류·표시(GHS) 제도 순회교육 큰 호응 얻어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이 “화학물질 분류·표시(GHS)” 제도의 정착을 위해, 2007년 12월 21일부터 2008년 1월 6일까지 전국 주요지역 10곳에서 실시한 순회 교육 결과, 당초 목표인 1,500여명 보다 많은 2,200여명이 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교육이 주로 대도시에서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등, UN의 GHS기준을 반영, 2006년 12월 개정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기준」(금년 7월 시행)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노동부는 순회교육과정에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기업으로부터 건의받은 사항 중 물질안전보건자료 항목별 세부작성 방법,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06-36호) 개정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는 GHS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화학물질 관련 협회나 단체, 기업 등에서 추가 설명회 요청 시에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2월부터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교육원에 2박3일 일정으로 “GH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실무 등을 위한 전문화 과정”을 개설(8회)하여 한층 심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 정철균 산업안전보건국장은 “많은 기업체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등 정부의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하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참여, 정보제공 등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GHS 상담창구(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 042-869-0312)나 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팀(☎ 032-5100-720),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02-6922-0958)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피해기업, 고용·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

'07.12. 7.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피해기업의 고용·산재보험료가 한시적으로 경감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원유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하여 금년 납기가 도래하는 고용·산재보험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한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07.12. 7부터' 08. 6.30까지 연체금이 면제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집행이 6.30까지 유예된다.

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원유 유출사고 피해복구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요양조치를 하고 각종 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7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선정

- 근로기준·노사조정분야 7명, 산업안전분야 3명 -

올 한해 일선노동현장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관계안정에 기여한 공이 큰 근로감독관 7명과 산업안전감독관 3명이 각각 올해의 근로감독관상 및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상을 받는다.

노동부는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1995년부터,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2005년부터 매년 선정하여, 노동부장관 표창과 1인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 수상자는, 조용선(43세,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 백선목(43세, 부산지방노동청), 박대석(42세, 대구지방노동청), 송요철(48세, 경인지방노동청), 이상곤(41세,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 정영선(46세, 광주지방노동청), 이태우(44세, 대전지방노동청청주지청)이다.

또,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수상자는 이봉찬(46세, 부산지방노동청), 이전홍(43세, 대구지방노동청), 홍광열(49세, 경인지방노동청)이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올해의 근로감독관과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사기를 높이고자 수여하는 것으로, 이를 계기로 근로감독관들이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노사관계안정 및 안전보건활동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폐업무 2008년 1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2008년도부터 지방노동관서에서 담당하고 있던 8대 광업 분진직업 종사자에 대한 진폐 관련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함에 따라, 2008년 1월 4일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청(김제락 지청장)은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하국환 지사장)로 관련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진폐근로자에 대한 산재요양 및 보험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진폐건강진단 및 위로금 지급은 지방노동관서에서 하는 등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2007년 11월 20일 의결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1월 1일 부로 시행되게 됨에 따라 업무를 이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진폐건강진단 및 진폐위로금 지급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업무와 통합서비스로 제공하게 되어 민원인의 편리성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축물 완공前 방화관리자 선임 의무화 추진

경기도는 이전 냉동창고 화재참사와 같은 인재(人災)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방화관리자를 준공허가 이전에 반드시 선임토록 하는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1천㎡ 이상의 공장이나 600㎡ 이상 근린생활시설물에 대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로도 최장 1개월 동안 방화관리자 부재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도(道)는 이에 따라 건축물 준공 1~2주에 앞서 시행되는 소방완공검사시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 건물의 소방관련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소방본부는 소방검사과정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면 현행보다 최장 45일가량 일찍 방화관리자를 확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산업안전기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

그동안 불명확하고 불합리하여 사업장의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적되어 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구체화되고 한국산업표준(KS기준)에 맞게 개정된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와 같이 개정, 16일 공포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뢰침”과 “화염방지기”는 국제기준을 인용한 KS 규격에 따르도록 하고, “사다리식 통로”는 이동식과 고정식으로 현실에 맞게 구분하였다.

또,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는 재해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작성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가스배관의 손상 방지”와 “항만하역시 조명”은 구체적인 조치방법 및 밝기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정철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명확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내실 있는 안전기준 설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쳐 꾸준히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부, 지하철 석면 관리·감독 강화

시민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석면을 철거하는 등 지하철 역사 석면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된다. 노동부는 우선 서울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2호선 방배역을 시작으로 석면함유자재가 많이 사용된 서울지하철 8개 역사는 냉·난방공사와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석면을 철거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부는 최근 문제가 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및 방배역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서울메트로에 안정화·밀폐 등 석면 비산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방배역과 같이 석면이 함유된 회반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다른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도 매일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석면 비산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석면이 함유된 천정 공사를 한 업체는 조사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무허가 석면해체·제거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메트로에 지하철 역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성균관 의대 김동일 교수팀에 의뢰해 지난해 5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근로자의 경우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흉막이상소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추적진료를 실시하도록 서울메트로에 권고하였다.

특히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5년마다 건강진단시 호흡기계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며 금연프로그램 실시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하철 석면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철 석면관리실무 TF’를 구성·운영하여 왔으며, 지난해 7월에는 범정부적인 ‘지하철 공기질 개선대책’ (석면대책 포함)을 마련하여 지하철역사 석면함유 실태조사, 단계적 석면 철거,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및 비산 방지 조치 실시 등을 추진해 왔다.

정철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경부·서울메트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